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문정복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489

발의연월일: 2021. 4. 14.

발 의 자:문정복·서영석·김민기

김승원 • 한준호 • 홍정민

정성호 · 김주영 · 박상혁

설 훈·오영환·이용우

윤호중 · 김상희 · 김용민

백혜려 • 윤후덕 • 임종성

강득구 · 김영진 · 송석준

고영인 · 최종윤 · 김병욱

전용기 • 이소영 • 이재정

이규민 • 정춘숙 • 심상정

김남국 의원(3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과도한 도시화 현상에 따른 주택난·토지난 등의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, 광역버스는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수요 해소에 상당부분 기 여하고 있음. 그럼에도 2개 이상의 광역시·도에 걸쳐 운행하는 특성 을 고려하지 못하여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재정지원 이 미흡한 상황임.

이에 광역버스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광역버스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

지원하고, 국민들의 교통편의를 증대시키고자 함(안 제8조제2항제5호의2 및 제10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8조제2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의2. 제10조의2에 따른 광역버스운송사업의 운영에 대한 재정 지원 에 관한 사항

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0조의2(광역버스운송사업의 운영에 대한 재정 지원) ①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는 노선의 기능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등을 고려 하여 광역버스운송사업 중 광역교통위원회가 지정한 사업의 운영에 대하여 지원하는 경우 국가가 그 비용의 100분의 50을 부담하고, 지 방자치단체에서 그 나머지를 부담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관계 시·도가 분담하는 경우에는 분담율을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.
 - ③ 제2항에 따라 시·도가 부담하는 비용을 해당 시·도와 시·군 또는 구(자치구를 말한다)가 분담하는 경우 그 분담률은 시·도지사 가 관계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.
 - ④ 지방자치단체는 광역버스운송사업의 운영에 대한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분담분

- 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그 해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
- ⑤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해당 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는 그 분담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있으며, 다른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정 혅 했 개 아 제8조(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제8조(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치 등) ① (생 략) 설치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광역교통위원회의 소관 업 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5. (생략) 1. ~ 5. (현행과 같음) 5의2. 제10조의2에 따른 광역버 <신 설> 스운송사업의 운영에 대한 재 정 지원에 관한 사항 6. • 7. (생략) 6. • 7. (현행과 같음) ③ (생략) ③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제10조의2(광역버스운송사업의 운영에 대한 재정 지원) ①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선의 기능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등을 고려하여 광역버스 운송사업 중 광역교통위원회가 지정한 사업의 운영에 대하여 지원하는 경우 국가가 그 비용 의 100분의 50을 부담하고, 지 방자치단체에서 그 나머지를 부담한다.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가 부담하는 비용을 관계 시ㆍ

도가 분담하는 경우에는 분담 율을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.

- ③ 제2항에 따라 시·도가 부 당하는 비용을 해당 시·도와 시·군 또는 구(자치구를 말한 다)가 분담하는 경우 그 분담 률은 시·도지사가 관계 시장 ·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 여 정한다.
- ④ 지방자치단체는 광역버스운 송사업의 운영에 대한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 1항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분담분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그 해 예산에 계상하여 야 한다.
- ⑤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해당 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는 그 분담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, 다른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.